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27호 2023. 5. 3.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45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 -51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3 -511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6
- 정선군 공고 제2023 -51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3 -514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8
- 정선군 공고 제2023 -515호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예고.....85

- 정선군 공고 제2023-516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103
- 정선군 공고 제2023-541호 아리터 CCTV 설치 행정예고.....128
- 정선군 공고 제2023-5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131
- 정선군보건소 공고 제2023-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13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45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정 선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여량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0	소로2-13 여량리 166-5전	여량리 161-1제	일반 도로	강고제100호 (03.04.28)	실효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158	소로2-13 여량리 141-42 전	소로2-8 여량리 162전	일반 도로	강고제100호 (03.04.28)	실효

- 임계도시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36	중로2-2 봉산리 246-1답	중로1-2 봉산리 240-30전	일반 도로	강고제101호 (03.04.28)	실효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690	소로1-4 봉산리 산74임	1호 근린공원경계 96-3전	일반 도로	강고제101호 (03.04.28)	실효

나. 공간시설

1) 녹지

- 정선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녹지	완충 녹지	준공업지역변 북실리 744-3번지 일원	2,190	감)2,190	-	강고제98호 (03.04.28)	실효

- 임계도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녹지	완충 녹지	임계면 송계리 624-4번지 일원	3,710	감)3,710	-	강고제101호 (03.04.28)	실효
폐지	6	녹지	완충 녹지	임계면 봉산리 240-11번지 일원	1,890	감)1,890	-	강고제101호 (03.04.28)	실효

2. 실효일자 : 2023.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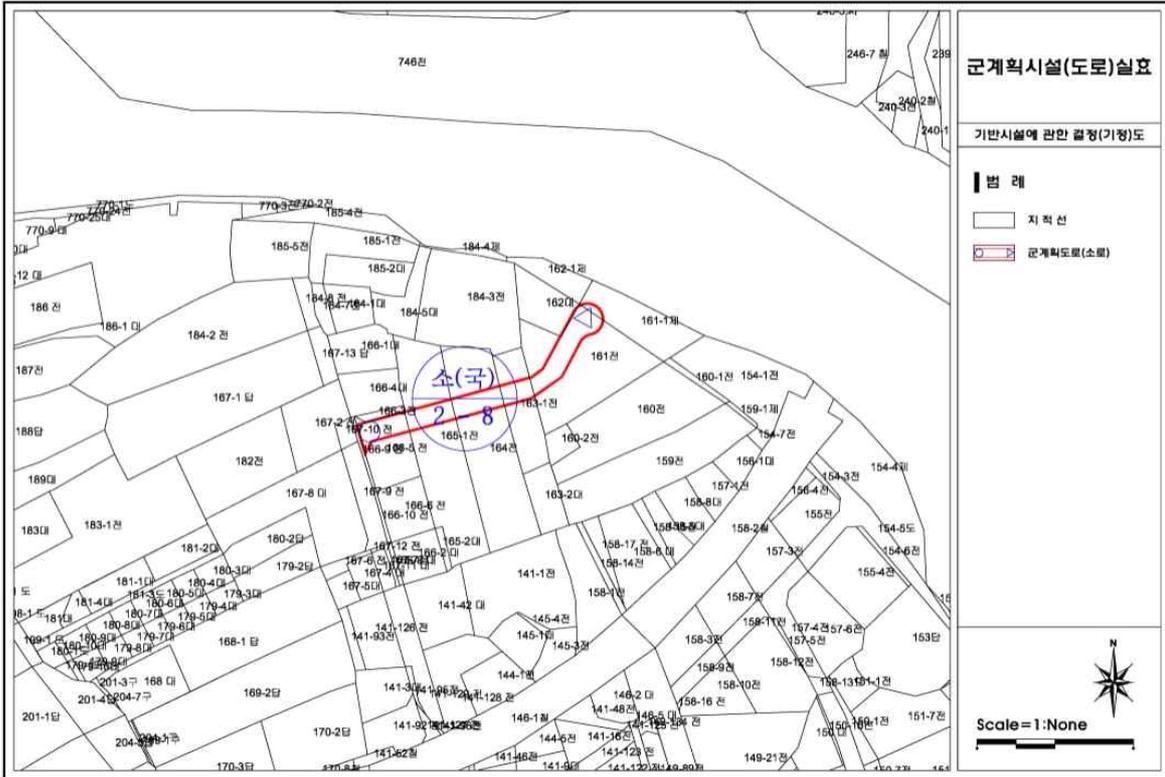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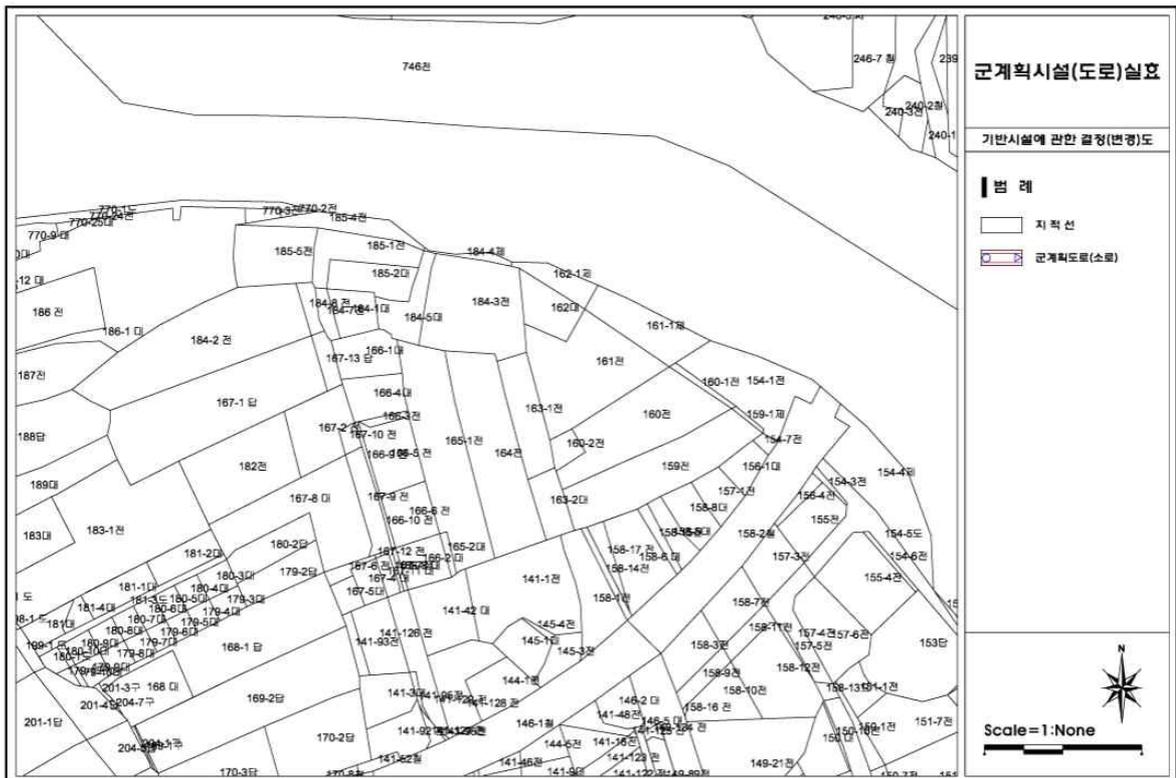
5. 관계도서는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여량도시지역 (소로2-8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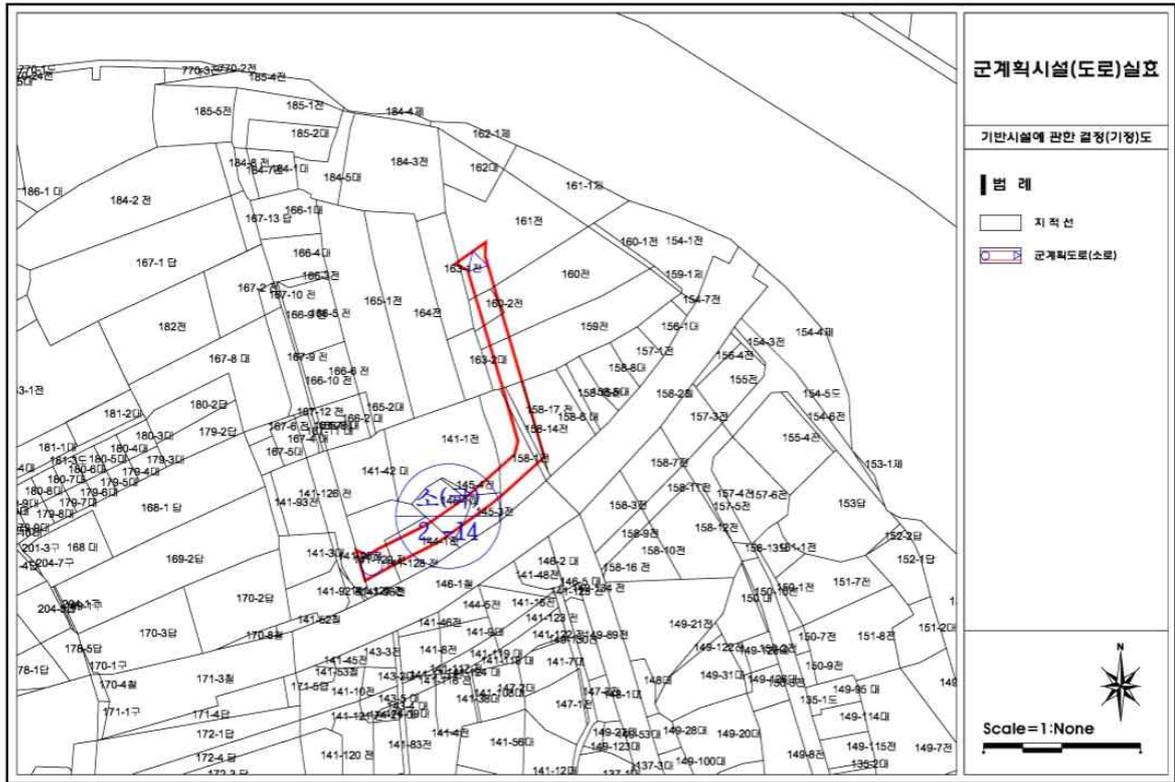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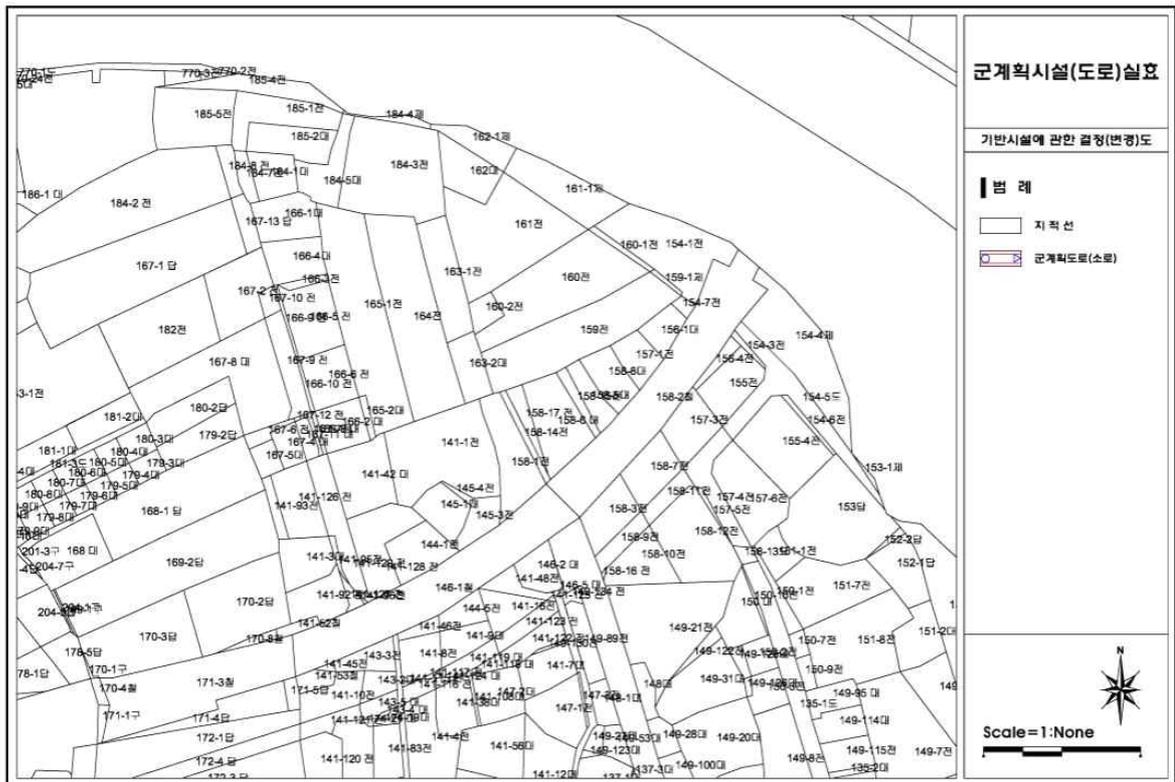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여량도시지역 (소로2-14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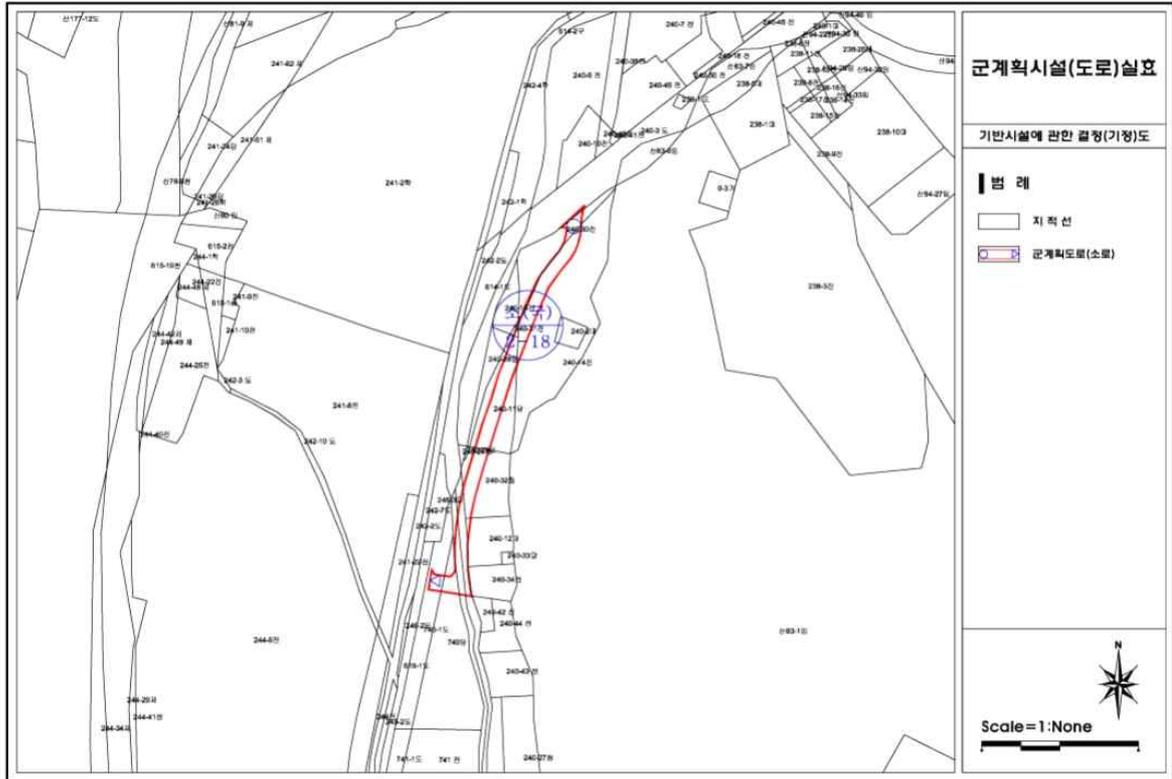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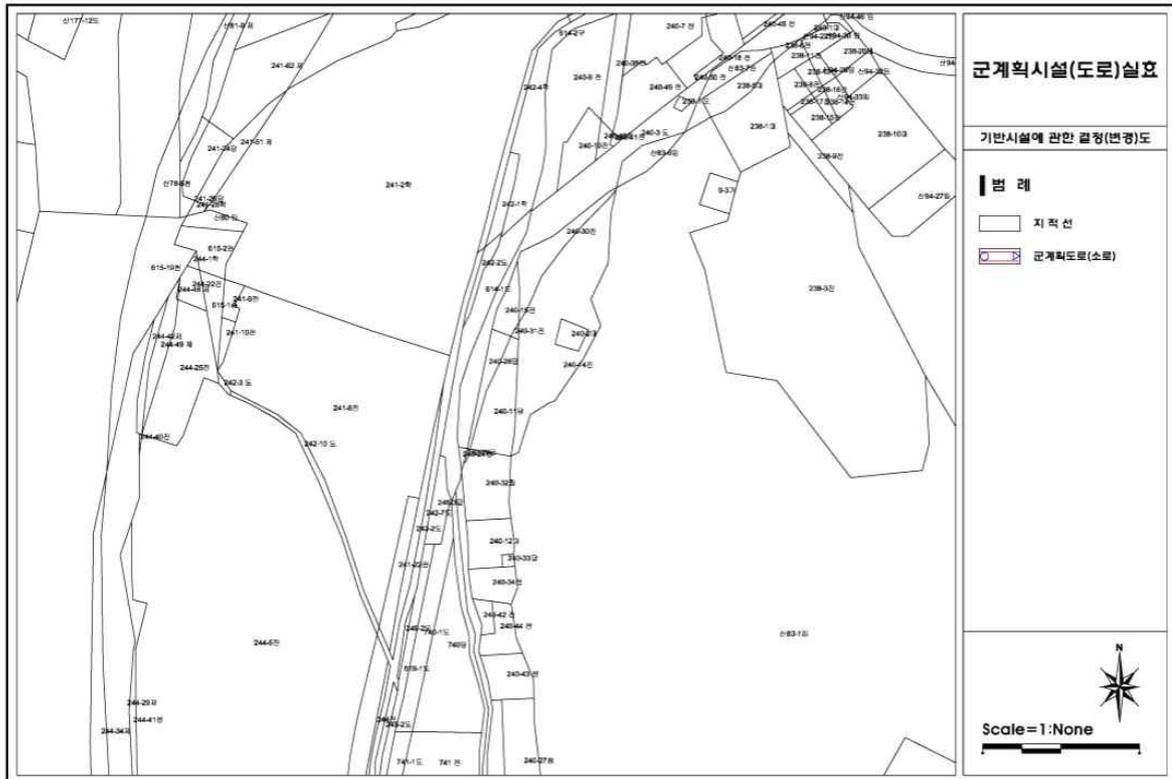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임계도시지역 (소로2-18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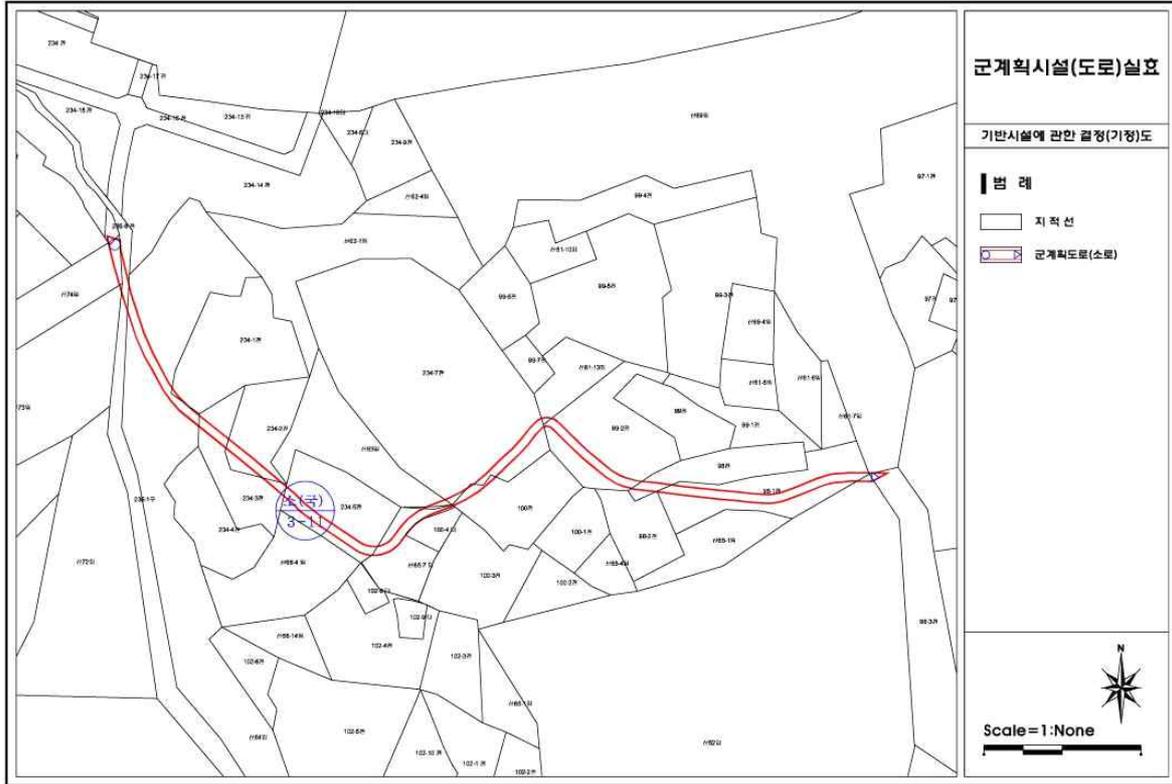


○ 변경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임계도시지역 (소로3-11호선)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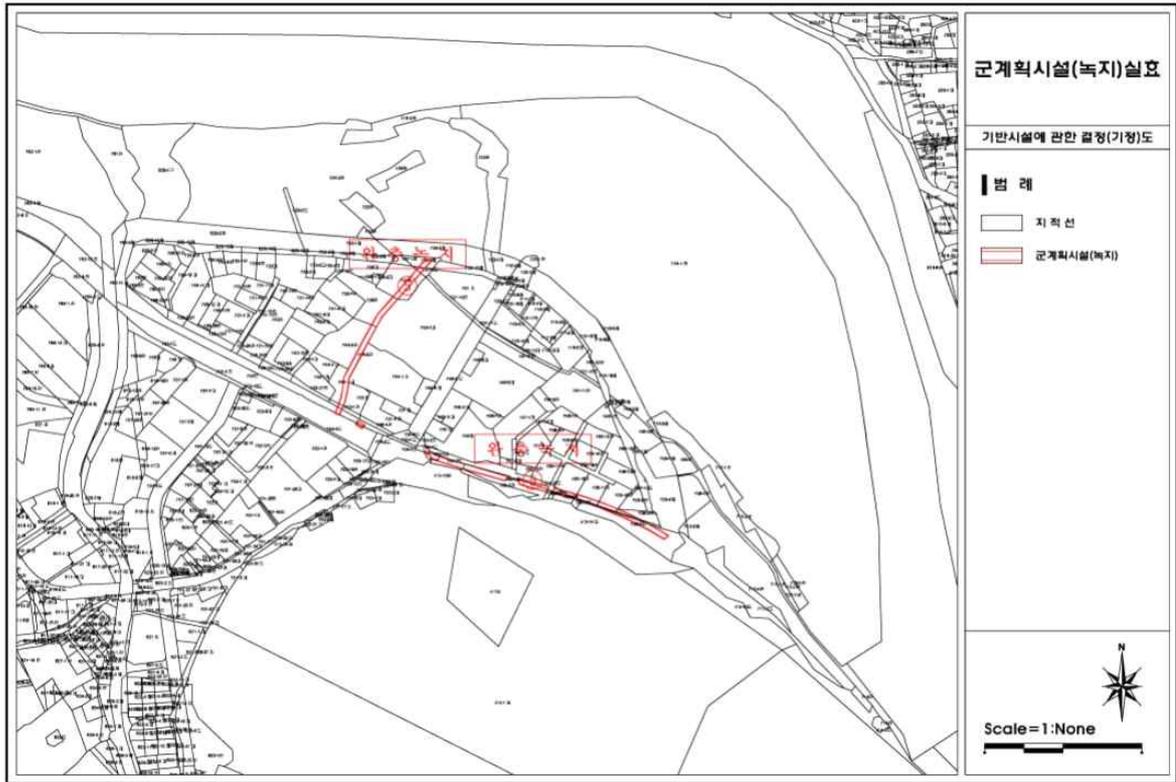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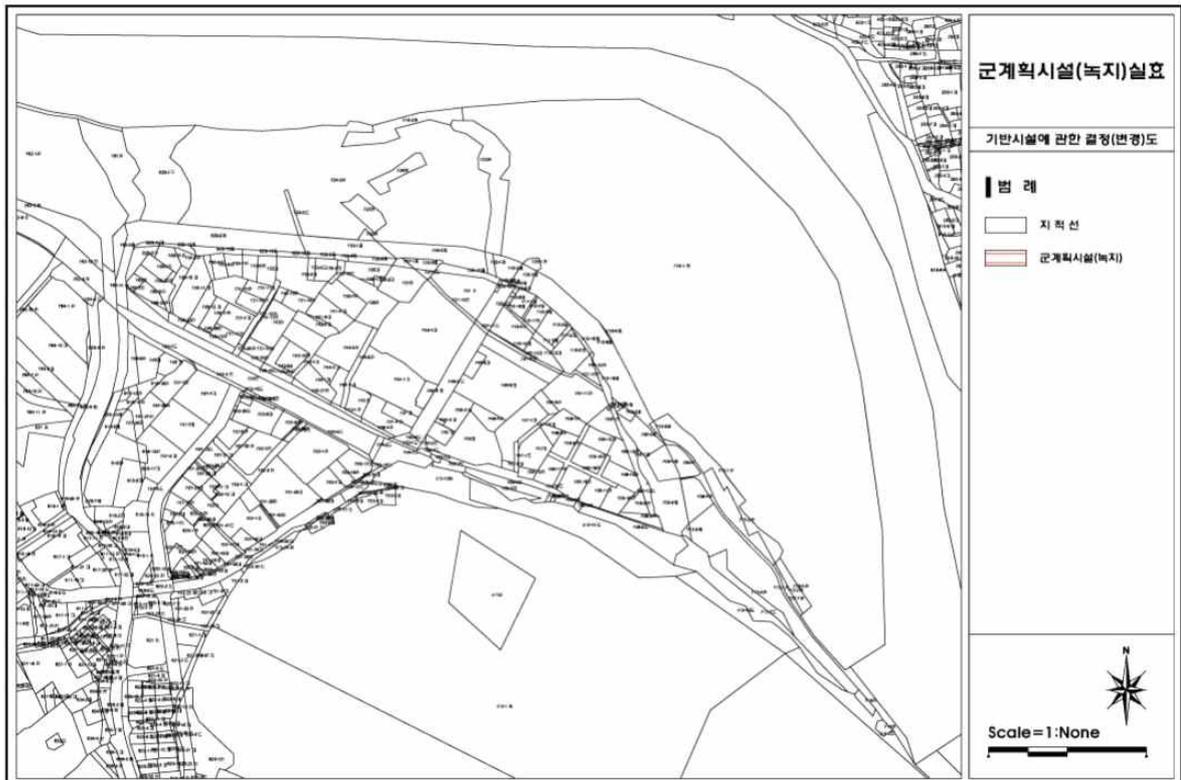


□ 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정선도시지역(완충녹지5)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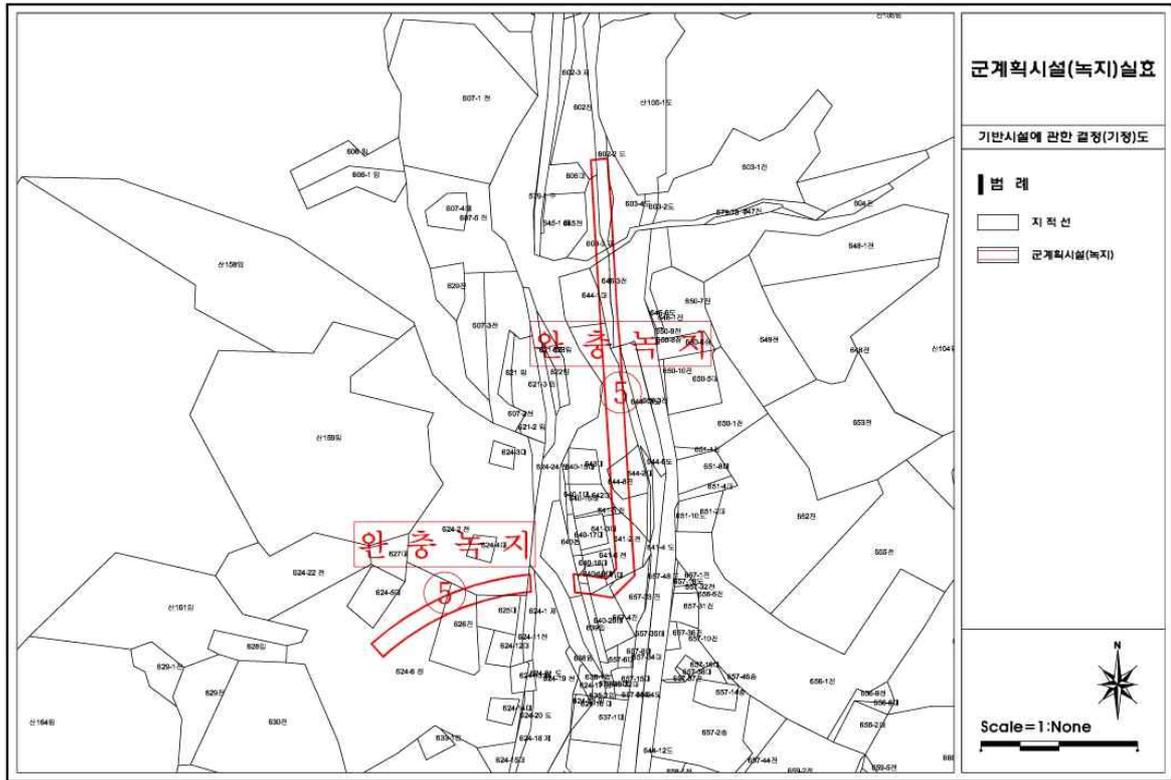


○ 변경



□ 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임계도시지역(완충녹지5)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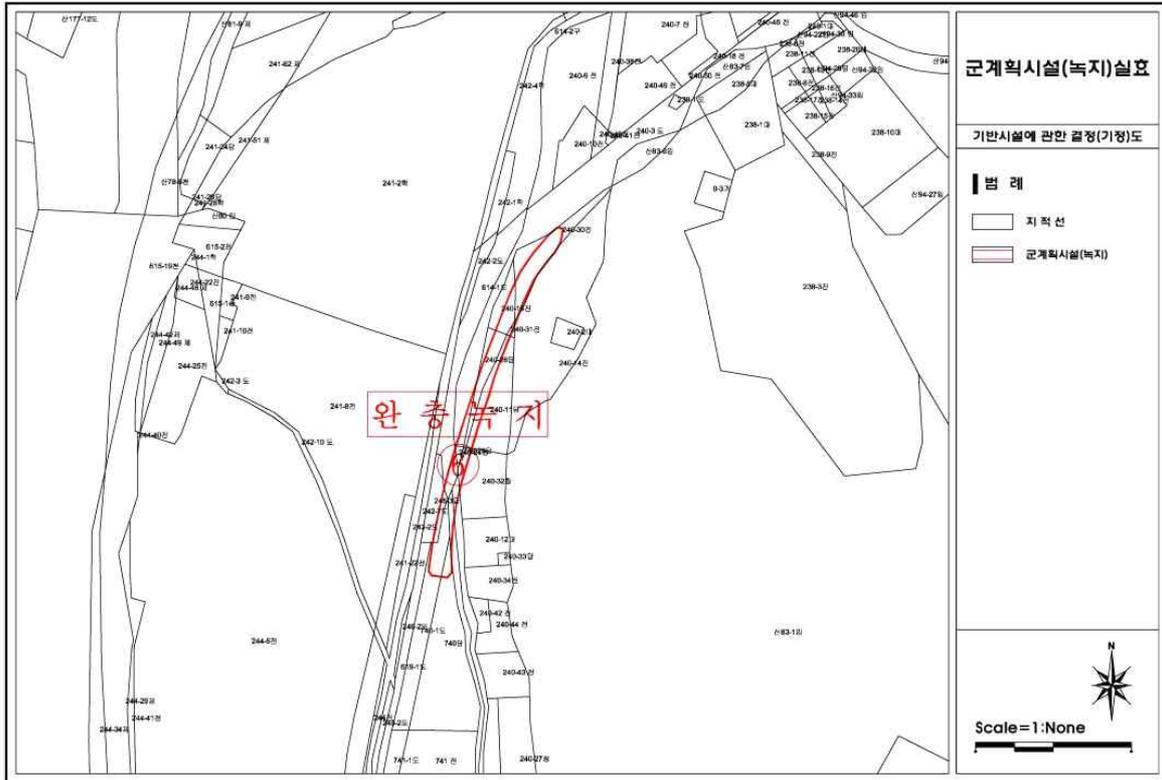


○ 변경



□ 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 임계도시지역(완충녹지6)

○ 기정



○ 변경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 -51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조)

- 전자고지,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

- 전자고지+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500원” 을 “800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 을 “1,600원”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 -----.</p> <p>1.----- -----500원</p> <p>2.----- -----1,000원</p> <p>② 제1항에 따른 부과되는 납세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 -----.</p> <p>1.----- -----800원</p> <p>2.----- -----1,600원</p>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p> <p>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p>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1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2.2.>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정선군 공고 제2023 -511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2000년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상위법 조문을 정리함은 물론 최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상위법 조문 정리

- 현행 25개 조문 → 개정 6개 조문

나.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4조)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 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 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 -513호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전부개정 「정선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4조~제7조)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정선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시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분할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일시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처리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제3조 관련)

년도 월분

접수 번호	신고일 자	성명·법 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 번호	생년월일(법인등 등록번호)						담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제4조 관련)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명(법 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 출 세 액	가산세	계	결의 일	결 재		
		전화 번호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담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접 수 번 호	성명(법 인명)	생년월일(법 인등록번호)	과세 물건	물건 의 소재 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 자	세 목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일 자	세 목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사유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5.20.>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7조 관련)

○○년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 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 준액	세율	산출 세액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성 명 (법인 명)	생년월 일 (법인등 등록번호)	주소								담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제10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접수 번호	신고일 자	성명(법 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 득세	납부일 자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담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제10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 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			합 계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제10조제1항 관련)

○○년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총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제11조 관련)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결 재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월별	남부 일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남부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12조 관련)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12조 관련)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제12조 관련)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제13조 관련)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고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연월일			
공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제13조 관련)

소유자	전 소유 자			현 소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 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 인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연월일			
공 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제13조 관련)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제13조 관련)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연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4.21.>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제14조 관련)

년도

월분

접수번호	토지면적 건물면적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납세자주소	과세표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재산세	지역자 원시설세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합계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4.21.>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제17조제1항 관련)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한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 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 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 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 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접수자	접수일
의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19조 관련)

○○년도

○○월분

접 수 번 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 리 일	주행 세 신 고 납부 일	주행 세 신 고 일	주행 세 납부 일	송 금 일	결 재		
	주소	상호 (법인 명)	사업자등 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대표 자	연락처	계	회발 유	경유						담당 자	팀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6. 12. 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9.>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 2. 제94조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3. 3. 14.>

⑥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3. 3. 14.>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 12. 30., 2019. 12. 31., 2020. 12. 29.>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 12. 30.>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24.>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3. 14.>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정선군 공고 제2023 -514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관리자급인 5급이상으로 확대 및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열거(안 제2조)
 - 채납액 납부독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 기여 범위 구체화
- 나.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5조)
 - 위원회 구성시 임기를 정하고 민간전문가 포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를 “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 을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세정발전” 으로, “규정함” 을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 를 “징수업무” 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을 “ “특별한 노력” 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중 “특별한 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2.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 를 각각 “지난 연도”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30만원이하” 를 “30만원 이하” 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를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2. 감사 및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각 전문개정>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7조제2항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을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 또는”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를 “신청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에 따라” 로, “이를” 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 로, “년도에” 를 “연도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u> 과 <u>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u>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u></p> <p>2. 3. (생략)</p> <p>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u>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u></p> <p>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31조의 <u>규정에 의한 징수유예</u></p>	<p><u>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세 기본법</u>」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제7항에서 <u>위임한 사항과 정선군의 세정발전</u>----- <u>규정하는 것</u>-----.</p> <p>제2조(지급대상) ① ----- <u>어느 하나에</u> ----- ----- -----.</p> <p>1. ----- <u>징수업무</u>----- -- “<u>특별한 노력</u>”으로 체납액 <u>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u> -----</p> <p>2. 3. (현행과 같음)</p> <p>4. 「<u>지방세징수법</u>」 제18조에 <u>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u></p> <p>② 제1항제1호 중 “<u>특별한 노력</u>”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
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
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
한 경우

2.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
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정선군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체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금지 요청 등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5. (생략)
6. 제2조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

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

2. 지난 연도 -----

3. 지난 연도 -----

4. 5. (현행과 같음)
6. -----

30만원 이하. --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

----- 따른 -----

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않는다.

7. ----- 따라 -----

② -----

----- . 다만-----
----- 한정하여 -----
-.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 각 호-----
-----.

- 1. ----- 따른 -----

-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생략)

제7조(지급신청) ① (생략)

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1.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
- 2. 감사 및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각 호 -----
-----.

-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각 전문개정>
-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
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
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
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
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음)

② ----- 각 호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
----- 따른
다.

④ -----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 또는 -----
----- 신청한다.

제8조(지급) ① ----- 제7조에 따
라 -----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
-. ----- 당해년도 -----
----- 연도에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않는다.

② ----- 해당 -----

-----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

----- 제43조에 따
른 -----

-----.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9.>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정선군 공고 제2023 -515호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체납자의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효완성정리” 용어와 법률적 효과없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 로 구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책적 용어인 시효완성정리와 내부적인 행정행위인 정리보류로 용어 구분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갑), 제9호(을), 제9호(병), 제10호 서식 용어 구분 정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선군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처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 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갑), 제9호(을), 제9호(병), 제10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 징수(부과)
 감액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정선군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목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도로명 주소)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은행수납일	수납구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수납금액	정당세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 포함)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 환급금		
				본월 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대년 간	대월 간	대조 정	본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 세																
00 세																
과년도 합계																
소계																
00 세																
00 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갑) 서식]

(앞 면)

정 리 보 류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 당	과 장	징수관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 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 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갑) 서식]

(뒷 면)

정 리 보 류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	성명(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 원)
(단위 :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지방세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 납 요 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 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처리</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 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에 따른다.</p>	<p>제14조(<u>정리보류</u>) ----- -- <u>정리보류</u>는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 <u>정리보류표</u>-----.</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u>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u>를 ----- ----- <u>정리보류 취소액</u>----- ----- -----.</p>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u>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u>를 ----- ----- -----</p>

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정리보류를-----
-----.

【관 계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을 때
2. 채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정선군 공고 제2023 -516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 반영 및 인용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제38조)

-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추가 신설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변경 : 7일 → 20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3. 제정(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 - 2288
- F A X : 033 - 560 - 2587
- E-mail : bulger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부, 서류,” 를 “해당 장부·서류 또는” 으로,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을 “물건(이하 “장부 등” 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7.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법 제76조제3항” 을 “법 제7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제96조제1항제3호” 를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로 한다.

- 1. 세무조사 내용
-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증)

	법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제조업 () 건설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판매업 () 운송업 ()	
○ 작성대리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기 타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지방세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제출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서 작성서식 (첨부 서식 확인)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 표지(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반드시 법인 직인 날인 및 작성자 전화번호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접수 불가)
- 입증자료 제출 : 뒷 페이지 입증자료 확인
- 조사서는 반드시 사업장별, 사업연도별[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제출
- 작성 후 보낼 곳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 문의전화 : 033) 560-000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입증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장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변동이 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포함)
 - 법인소유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토지, 건물, 용지, 시설물(건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지급수수료, 건설중인자산,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그 밖의 비용계정 등
 - ※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미제출시에는 검토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
 - 신·증축 건물 연도별 공사(분양)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토지 계약시점부터 건물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연도 전체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포함)
 -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포함 제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시공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 리스계약서, 리스해지계약서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였거나 임차하였을 경우)
- ※ 첨부된 서류는 □내에 √ 표기하여 주시고, 첨부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 선 군 수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서식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8 참고)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2> 주민세 사업소분(구.재산분) 명세서(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참고)

○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사업장면적 330㎡이하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만 기재
330㎡ 초과는 1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임차 사업장, 건축물대장 없는 시설·무허가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① 연면적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건축물대장 첨부)

- 건축물 밖의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저장창고), 저장조 등)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결과 통보문 등 첨부)

② 과세제외 면적 : 예시) 기숙사 : 250㎡

- 과세제외 대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면적을 계산한 건물 평면도 및 사진 등 첨부)

③ 산출세액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 과세면적 × 250원 : 과세면적 중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음.

<서식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7 참고)

○ 면세점(2015년 이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월 통상인원수)가 50명이하인 경우 면세

※ 2020년 지방세법 개정

구분	개정 후(2016.1.1. 이후)	개정 후(2020.1.1. 이후)
면세기준	월급여 총액 1억3,500만원 이하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

* 월급여 총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 종업원의 의미

- 종업원이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계약이라 함은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관계를 말하고 상시·수시 고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간급·일급·월급·연봉 등 지급형태나 방법을 불문함

- 수시 고용인원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예시)

$$\text{월 통상인원} = \frac{\text{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text{종업원수}} \times \frac{\text{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text{해당 월의 일수}}$$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예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를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④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 2020.1.1.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	--	---------	--	------	--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세 액	③ 기 납 부 세 액	납 부 일자	차인 세액 (②-③)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297mm×210mm[보존(2종)70g/m²]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총지급 급여액	급여												
상여															
③소계															
② 과세 제외 급여															
③ 종업 원수	연장														
	차량														
	①소계														
	관리														
과세 급여 총액 ④=(③-②)	생산														
	수시														
	계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⑤=④×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보존(2종)70g/m²]

[별표]

(1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세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사실 판단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③ (생략)

제13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검증으로 조사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 대 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 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 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 6. (생략)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 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1. ~ 5. (현행과 같음)

6.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7.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 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 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법 제88조제 5항제2호 -----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 한 세무조사 유예)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3.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

----- 법 제77조제2항-----

-----.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략)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삭제>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
 사를 마친 경우

6. (생 략)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
 --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
 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
 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
호 ---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2020. 12. 29.>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023. 3. 14.>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선군 공고 제2023-541호

아리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아리터 시설물 안전 관리와 화재 및 훼손·도난 등 재난·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정선군 정선읍 봉양 5길 31 아리터 시설 관리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3.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아리터 CCTV설치
- 나. 시 행 자 : 정선군(관광과)
- 다. 설치장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1
- 라. 설치대수 : CCTV 4대

4. 공고개요

- 가. 공고기간 : 2023. 4. 27. ~ 2023. 5. 16.(20일간)
- 나.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관광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23. 4. 27. ~ 2023. 5. 16.(20일간)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팩스
- 다. 제출처 : 정선군 관광과
 - 우 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관광과)
 - 전 화 : 033) 560-2362
 - F A X : 033) 560-2593
-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명) 등 인적사항
- 마.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

「아리터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아리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3-5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정 선 군 수

1. 공고 목적

건설사업자가 정선군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시 선정을 위한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2.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마감일까지 강원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건축, 종합분야)

3. 제출서류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붙임서식 별지 제7호]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붙임서식 별지 제8호]
-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고 일정

- 가. 모집 공고
 - 일 정 : 2023. 5. 3.(수) ~ 5. 26.(금)(20일 이상)
 - ※ 홈페이지 : www.jeongseon.go.kr(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 나. 신청서 접수·마감

- 접수 기간 : 2023. 5. 23.(화) ~ 5. 26.(금) 18:00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토목팀

다. 명부 공개

- 공개 일자 : 2023. 6. 2(한).(예정)
- ※ 홈페이지 : www.jeongseon.go.kr(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5.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직무 분야별 참가기관이 2개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 또는 추가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 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공고 시 공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토목팀(033-560-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소 공고 제2023-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정 선 군 수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주소	지정범위	시행일	비고
제 1호	정선봉양LH아파트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23-34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2023. 4. 25.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3. 04. 25. ~ 2023. 10. 25.(6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23. 10. 26.부터
- 과태료 부과 : 5만원 (계도기간 이후)

4.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863)으로 문의 바랍니다.